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3호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9 8 8 호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	2
○ 공	고 제 9 9 4 호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 공	고 제 9 9 7 호 2017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 공	고 제 1 0 0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0
○ 공	고 제 1 0 0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8
○ 공	고 제 1 0 1 0 호 도로지정공고	25
○ 공	고 제 1 0 1 4 호 2017년 6월 취득세 공시송달	26

고 시

○ 고	시 제 6 1 호 도로명주소 고시	28
-----	--------------------	----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2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1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7년 5월 31일 ~ 2017년 6월 14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2. 당사자	성 명	박 * *	주인 등록번호	490711-*****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두물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00,000원 부과 통지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2]-나-5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5. 31. ~ 2017. 6. 14. (15일간)

2. 공고내용

가. 대상자 및 처분 현황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350-6761	박*운	천지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천 남동구 석산로 211, 1층(간석동)	중개사무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소미확보]	등록취소 (2017.5.23.)

나.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 제1호

3. 만약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97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규 외 114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7년 0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17.05.31.일을 2017.06.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 내 금융기관 및 전자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6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1	135001 2017 05 2 660 000145	361108-*****	이**규	기타용수	3,330
2	135001 2017 05 2 800 000126	120111-*****	오**상**(주)	기타용수	8,420
3	140002 2017 05 2 510 000356	710310-*****	김**일	예정신고분	2,311,390
4	140002 2017 05 2 520 000313	740613-*****	최**아	예정신고분	528,080
5	140002 2017 05 2 520 000331	660928-*****	이**복	예정신고분	5,264,040
6	140002 2017 05 2 520 000368	550329-*****	이**도	확정결정분	1,946,190
7	140002 2017 05 2 540 000335	620123-*****	이**정	예정신고분	1,687,720
8	140002 2017 05 2 581 000371	450915-*****	소**순	확정결정분	976,430
9	140002 2017 05 2 583 000325	680816-*****	임**분	예정신고분	1,157,700
10	140002 2017 05 2 690 000319	571025-*****	조**구	예정신고분	681,920
11	140002 2017 05 2 690 000349	660607-*****	문**숙	예정신고분	706,990
12	140002 2017 05 2 700 000381	710828-*****	김**미	확정결정분	735,340
13	140003 2017 05 2 510 000261	121111-*****	세**환**관**(주)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3,554,550
14	140003 2017 05 2 510 000263	120111-*****	국**전**복**사**단**주**회**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48,430
15	140003 2017 05 2 510 000264	120111-*****	보**중**건**주**회**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417,910
16	140003 2017 05 2 510 000265	120111-*****	(주)아**티**전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894,500
17	140003 2017 05 2 510 000267	124611-*****	(주)대**티**씨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56,660
18	140003 2017 05 2 521 000256	174811-*****	주**회**신**계**건**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4,055,330
19	140003 2017 05 2 521 000262	110111-*****	웹**엠**에**(주)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124,110
20	140003 2017 05 2 522 000266	165011-*****	(주)창**개**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390,890
21	140003 2017 05 2 522 000269	110111-*****	(주)삼**산**개**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4,599,830
22	140003 2017 05 2 530 000272	120111-*****	(주)성**산**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6,189,000
23	140003 2017 05 2 550 000271	120111-*****	주**회**모**베**비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29,500
24	140003 2017 05 2 550 000274	120111-*****	주**회**연**아**앤**이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590,600
25	140003 2017 05 2 550 000277	120111-*****	엠**이**코**아**주**회**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5,096,560

26	140003 2017 05 2 551 000273	110111-*****	도**산**개**(주)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539,200
27	140003 2017 05 2 551 000275	120111-*****	(주)에**티**루**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642,070
28	140003 2017 05 2 551 000276	120111-*****	주**회**형**토**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592,600
29	140003 2017 05 2 560 000278	120111-*****	주**회**진**유**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532,170
30	140003 2017 05 2 560 000281	120111-*****	장**중**건**주**회**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854,000
31	140003 2017 05 2 570 000280	120111-*****	만**중**문**(주)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8,745,090
32	140003 2017 05 2 580 000279	110111-*****	미**자**운**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591,240
33	140003 2017 05 2 710 000249	120111-*****	해**목**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497,530
34	140003 2017 05 2 710 000250	120111-*****	(주)한**스**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3,130
35	140003 2017 05 2 800 000247	120111-*****	(주)티**스**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494,790
36	140003 2017 05 2 800 000248	120111-*****	(주)노**스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99,270
37	140003 2017 05 2 800 000251	120111-*****	(주)월**포**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833,050
38	140003 2017 05 2 800 000252	230111-*****	(주)경**기**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925,740
39	140003 2017 05 2 800 000253	120111-*****	(주)영**산**개**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367,460
40	140003 2017 05 2 800 000284	120111-*****	2*세**테**(주)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823,770
41	140003 2017 05 2 800 000285	120111-*****	해**목**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3,165,600
42	140003 2017 05 2 800 000286	120111-*****	해**목**	2013년 귀속 법인소득세	14,292,290
43	140003 2017 05 2 800 000287	120111-*****	해**목**	2012년 귀속 법인소득세	1,180,560
44	140003 2017 05 2 800 000289	120111-*****	해**목**	2011년 귀속 법인소득세	418,500
45	140003 2017 05 2 800 000290	120111-*****	해**목**	2010년 귀속 법인소득세	2,456,040
46	140003 2017 05 2 800 000291	120111-*****	해**목**	2009년 귀속 법인소득세	519,990
47	140003 2017 05 2 800 000300	120111-*****	해**목**	2006년 귀속 법인소득세	275,420
48	140003 2017 05 2 800 000303	120111-*****	해**목**	2007년 귀속 법인소득세	855,020
49	140004 2017 05 2 510 005009	110111-*****	인**스**	2016년07월귀속분 :사업소득	4,790
50	140004 2017 05 2 510 005071	710416-*****	안**현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339,490
51	140004 2017 05 2 510 005084	831009-*****	김**경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111,900
52	140004 2017 05 2 510 005117	120111-*****	주**회** **산**웃**싱	2016년12월귀속분:근로소득	2,160

53	140004 2017 05 2 510 005125	120111-*****	(주)태**H*A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13,170
54	140004 2017 05 2 510 005126	120111-*****	(주)태**H*A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74,970
55	140004 2017 05 2 510 005189	120111-*****	아**스**터**셔**(주)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5,290
56	140004 2017 05 2 510 005417	120111-*****	동**주**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16,110
57	140004 2017 05 2 510 005484	710303-*****	조**영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48,010
58	140004 2017 05 2 510 005594	120111-*****	주**회**명**엠**스	2016년12월귀속분 :퇴직소득	17,950
59	140004 2017 05 2 510 005690	120111-*****	주**회**미**어**이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5,840
60	140004 2017 05 2 510 005747	120111-*****	강**웨**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3,170
61	140004 2017 05 2 510 005784	120111-*****	주**회**주**이**씨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160,770
62	140004 2017 05 2 510 005785	731207-*****	김**라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15,730
63	140004 2017 05 2 510 005923	120111-*****	(주)예**컴**엔**	2016년07월귀속분 :사업소득	5,610
64	140004 2017 05 2 510 005924	120111-*****	(주)예**컴**엔**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1,580
65	140004 2017 05 2 510 005925	120111-*****	(주)예**컴**엔**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06,830
66	140004 2017 05 2 510 005926	120111-*****	(주)예**컴**엔**	2017년01월귀속분 :법인원천	24,890
67	140004 2017 05 2 510 006060	660120-*****	이**수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990
68	140004 2017 05 2 521 005689	761112-*****	박**영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17,450
69	140004 2017 05 2 521 006094	120111-*****	(주)현**중**개**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9,710
70	140004 2017 05 2 522 005678	580911-*****	김**중	2016년07월귀속분 :근로소득	12,670
71	140004 2017 05 2 530 005244	120111-*****	(주)에**지**라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207,430
72	140004 2017 05 2 530 005431	940706-*****	강**인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700,970
73	140004 2017 05 2 530 006118	611027-*****	장**순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6,340
74	140004 2017 05 2 550 005097	120111-*****	주**회** **람**리	2016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2,660
75	140004 2017 05 2 550 005098	120111-*****	주**회** **람**리	2016년02월귀속분 :근로소득	7,210
76	140004 2017 05 2 550 005099	120111-*****	주**회** **람**리	2016년03월귀속분 :근로소득	5,900
77	140004 2017 05 2 550 005100	120111-*****	주**회** **람**리	2016년04월귀속분 :근로소득	2,680
78	140004 2017 05 2 550 005101	120111-*****	주**회** **람**리	2016년05월귀속분 :근로소득	1,770
79	140004 2017 05 2 550 005102	120111-*****	주**회** **람**리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28,010

80	140004 2017 05 2 550 005978	110111-*****	(주)터**마**크	2017년01월귀속분 :이자소득	7,320
81	140004 2017 05 2 550 005979	110111-*****	(주)터**마**크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3,930
82	140004 2017 05 2 560 005623	720713-*****	박**서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41,420
83	140004 2017 05 2 560 005644	110111-*****	(주)오**앤**크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7,930
84	140004 2017 05 2 560 006056	120111-*****	주**회** **성**앤**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27,110
85	140004 2017 05 2 570 005572	690113-*****	이**아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11,100
86	140004 2017 05 2 660 005866	120111-*****	예**통**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65,980
87	140004 2017 05 2 660 005867	120111-*****	예**통**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10,650
88	140004 2017 05 2 660 005868	720414-*****	최**웅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580
89	140004 2017 05 2 690 005212	800204-*****	이**자	2016년07월귀속분 :사업소득	25,620
90	140004 2017 05 2 700 005181	110111-*****	예**에**건**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7,020
91	140004 2017 05 2 710 006010	730901-*****	윤**옥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360
92	140004 2017 05 2 710 006149	701120-*****	강**환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30,110
93	140004 2017 05 2 710 006169	135511-*****	주**회** **리**에**마**	2016년12월귀속분 :퇴직소득	13,640
94	140004 2017 05 2 710 006170	135511-*****	주**회** **리**에**마**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3,170
95	140004 2017 05 2 710 006171	135511-*****	주**회** **리**에**마**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75,750
96	140004 2017 05 2 800 005051	660208-*****	강**식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4,400
97	140004 2017 05 2 800 005128	490123-*****	전**일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231,160
98	140004 2017 05 2 800 005129	490123-*****	전**일	2016년12월귀속분 :퇴직소득	56,960
99	140004 2017 05 2 800 005258	510826-*****	정**엽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3,760
100	140004 2017 05 2 800 005339	110111-*****	(주)아**덱**라**팅	2016년02월귀속분 :사업소득	3,300
101	140004 2017 05 2 800 005340	110111-*****	(주)아**덱**라**팅	2016년02월귀속분 :근로소득	52,860
102	140004 2017 05 2 800 005581	120111-*****	해**개**(주)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23,350
103	140004 2017 05 2 800 005583	810726-*****	선**영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46,350
104	140004 2017 05 2 800 005597	120111-*****	주**회**경**에**티**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8,960
105	140004 2017 05 2 800 005605	670130-*****	박**성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7,550
106	140004 2017 05 2 800 005636	120111-*****	파**에**유(주)	2016년11월귀속분 :근로소득	83,130

107	140004 2017 05 2 800 005638	811220-*****	김**경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34,310
108	140004 2017 05 2 800 005701	671101-*****	최**형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8,590
109	140004 2017 05 2 800 005811	690903-*****	신**용	2016년12월귀속분 :사업소득	13,960
110	140004 2017 05 2 800 005836	820111-*****	윤**수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4,390
111	140004 2017 05 2 800 005859	860810-*****	황**민	2017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1,910
112	140004 2017 05 2 800 005940	120111-*****	(주)금**테**	2016년07월귀속분 :근로소득	172,620
113	140004 2017 05 2 800 005941	120111-*****	(주)금**테**	2016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72,470
114	140004 2017 05 2 800 006006	120111-*****	주**회** **이**	2016년12월귀속분 :근로소득	1,420
115	140004 2017 05 2 800 006168	120111-*****	(주)도**선**	2017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58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0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6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
-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안 제5조)
 -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등
-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03, FAX 453-25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
-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안 제5조)
 -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등
-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남동구 관내에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0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6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문화체육과) / ☎ 453-2133,
FAX 453-21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여 관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5호 단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관람하고 자 하는 자. <단서 신설>	제9조(관람의 제한)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 애틀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 장하여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6. (현행과 같음)
6. (생 략)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010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6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17. 6. 2. ~ 2017. 7. 3.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성 명	이해관계인동의
서창동 228-9	2,468	4	9	김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014호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양**동 외 19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7년 3월 독촉 및 1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7년 3월 독촉 및 1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7.5.31.을 2017.6.30.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6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득세 2017년 5월 수시분 및 2017년 3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자 주소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양**동	65082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 ***동 ***호 (무악동,무악현대아파트)	101501 2017 03 2 510 012486	수취인미거주	881,580
2	취득세	양**은	0409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 ***동 ***호 (무악동,무악현대아파트)	101501 2017 03 2 510 012487	수취인미거주	587,910
3	취득세	이**숙	770223-*****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70번길 **, ***호 (역곡동,일안타운)	101501 2017 03 2 580 015640	수취인미거주	8,977,570
4	취득세	최**정	630306-*****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 ***동 ***호 (행암동,효천내천년나루3단지아파트)	101501 2017 03 2 582 012450	수취인미거주	312,580
5	취득세	최**석	660815-*****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 ***동 ***호 (화정동,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	101501 2017 03 2 582 012452	수취인미거주	312,580
6	취득세	최**호	7709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2나길 *** (녹번동)	101501 2017 03 2 582 012453	수취인미거주	312,580
7	취득세	최**름	790410-*****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79번길 *** (우산동)	101501 2017 03 2 582 012454	수취인미거주	312,580
8	취득세	최**희	821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2나길 *** (녹번동)	101501 2017 03 2 582 012455	수취인미거주	312,580
9	취득세	김**배	520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 ***동 ***호 (잠원동,신반포18차아파트)	101501 2017 03 2 690 012425	수취인미거주	426,290
10	취득세	김**희	5412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 (26통6반)	101501 2017 03 2 690 012427	수취인미거주	426,290
11	취득세	김**심	57040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 *층 (풍덕천동)	101501 2017 03 2 690 012663	수취인미거주	2,112,750
12	취득세	박**민	690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 *동 ***호 (구월동,한미빌라)	101501 2017 05 2 521 024900	수취인미거주	688,690
13	취득세	한**용	6810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2길 ** (이문동)	101501 2017 05 2 550 025272	수취인미거주	8,333,450
14	취득세	한**용	6810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2길 ** (이문동)	101501 2017 05 2 550 025273	수취인미거주	6,030,750
15	취득세	한**용	6810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2길 ** (이문동)	101501 2017 05 2 550 025274	수취인미거주	8,333,450
16	취득세	한**용	6810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2길 ** (이문동)	101501 2017 05 2 550 025275	수취인미거주	7,760,890
17	취득세	강**경	800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 ***동 ***호 (청담동,청담우방아파트)	101501 2017 05 2 551 024876	수취인미거주	938,710
18	취득세	서**영	7801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11번길 ** (광안동)	101501 2017 05 2 551 024884	수취인미거주	927,160
19	취득세	조**홍	670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A동 ***호 (간석동,간석오피앙)	101501 2017 05 2 551 025226	수취인미거주	1,417,170
20	취득세	장**순	591225-*****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63번길 **, **동 ***호 (학익동,신동아아파트)	101501 2017 05 2 710 026365	수취인미거주	5,329,05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6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9 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5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10	2009. 11.16.	인근에 위치한 성리초등학교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성리로 1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로8 4번길	42	2009. 11.16.	एको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84번길 42 기초구간에위치하여42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58	2009. 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258 기초구간에위치하여258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102번 길	50	2009. 11.16.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102번길 50 기초구간에위치하여50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도	11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75-9	2009. 11.16.	만의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 175-9 기초구간에위치하여175-9를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3-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 길	82-8	2009. 11.16.	구월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말로3번길 82-8 기초구간에위치하여82-8를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9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8-8	2009. 07.10	장수천과 골포천을 연결하려다 암석을 뚫지 못했다는 설을 인용하여 제명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무네미로 28-8 기초구간에위치하여28-8를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53-3 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82	2009. 11.16.	용부리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7. 05.3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부리안길 82 기초구간에위치하여82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0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5	2017.05.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9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8-8	2017.05.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3-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85-8	2017.05.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53-3 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82	2017.05.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58	2017.05.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